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출 연 안 상 정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20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7
2016-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25
201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33
2016-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41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 출 연 안 상 정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20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7
2016-	거창 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25
2016-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33
2016-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41



# 재 무 과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10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2017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허동훈)
- 사 업 비 : 3,2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3,085	3,200	3,200			3,200	

- 사업내용 :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 수행

## 3. 부서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3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6.05.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5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6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과건되거나 당연직은 (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를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8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6.05.10. 현원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	○○광역시 ○구 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이○○	○○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	○○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	○○광역시 ○○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	○○도 ○○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	○○도 ○○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	○○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 지 지자체가 출자·출연 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665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8,315	7,518	8,406		부채	6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7,712	7,198	8,276		자본 <sup>1)</sup>	6,60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붙임 2]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 지방재정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붙임 3]\_기타 참고자료

지역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심의(안)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금 의회 사전심의 자료(별첨자료포함). 끝.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세정과장), 부산광역시(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세정과장), 광주광역시(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세정과장), 울산광역시(세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세정담당관), 경기도지사(세정과장), 강원도지사(세정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노원구청장(재무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기획재정부(재무과장),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세무과장), 동작구청장(세무1과장), 관악구청장(세무1과장), 서초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영도구청장(세무과장), 부산진구청장(시세과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세무과장), 해운대구청장(세무1과장), 사하구청장(세무과장), 금정구청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세무과장), 연제구청장(세무과장), 수영구청장(세무과장), 사상구청장(세무과장), 기장군수(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세무과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세무1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세무과장), 달성군수(세무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세무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재무과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재무과장), 광주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세무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세무1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세무1과장(수신불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세무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세무1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세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세무과장), 울주군수(세무1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세무팀장), 수원시장(세정과장), 성남시장(세정과장), 고양시장(세정과장), 부천시(세정과장), 용인시장(세정과장), 안산시장(세정과장), 안양시장(세정과장), 남양주시(세정과장), 의정부시장(세정과장), 평택시장(세정과장), 시흥시장(세정과장), 화성시장(세정과장), 광명시장(세정과장), 파주시(세정과장), 군포시장(세정과장), 광주시장(세정과장), 김포시장(세정과장), 인천시(세무과장), 구리시장(세무과장), 양주시(세무과장), 안성시장(세무과장), 포천시(세정과장), 오산시(세무과장), 하남시장(세무과장), 의왕시장(세무과장), 여주시(세무과장), 동두천시장(세무과장), 양평군수(세무과장), 과천시(세무과장), 가평군수(세정과장), 연천군수(세무회계과장), 춘천시(세정과장), 원주시(세무과장), 강릉시장(세무과장), 동해시장(세무과장), 태백시장(세무과장), 속초시장(세무과장), 삼척시장(세무과장), 홍천군수(재무과장), 횡성군수(세무회계과장), 영월군수(재무과장), 평창군수(재무과장), 정선군수(세무회계과장), 철원군수(세무과장), 화천군수(재무과장), 양구군수(재정운영과장), 인제군수(세무회계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양양군수(세무회계과장), 청주시(세정과장), 충주시(세정과장), 제천시(세정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세정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천안시장(세정과장), 공주시(세무과장), 보령시장(세무과장), 아산시(세무과장), 서산시(세무과장), 논산시(세무과장), 계룡시장(세무회계과장), 당진시장(세무과장), 금산군수(재무과장), 부여군수(재무과장), 서천군수(재무과장), 청양군수(재무과장), 홍성군수(재무과장), 예산군수(재무과장), 태안군수(재무과장), 전주시장(재무과장), 군산시(세무과장), 익산시(세무과장), 정읍시장(세정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세정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기획재정실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목포시장(세정과장), 여수시장(세무과장), 순천시(세무과장), 나주시(세무과장), 광양시장(세정과장), 담양군수(세무회계과장), 곡성군수(재무과장), 구례군수(재무과장), 고흥군수(재무과장), 보성군수(재무과장), 화순군수(재무과장), 장흥군수(재무과장), 강진군수(세무회계과장), 해남군수(세무회계과장), 영암군수(재무과장), 무안군수(재무과장), 함평군수(재무과장), 영광군수(세무회계과장), 장성군수(재무과장), 완도군수(재무과장), 진도군수(세무회계과장), 신안군수(세무회계과장), 포항시장(세정과장), 경주시(세정과장), 김천시(세정과장), 안동시장(세정과장), 안동행정국장(세무과장), 영주시(세무과장), 영천시(세정과장), 상주시(세정과장), 문경시장(세무과장), 경산시(세무과장), 군위군수(재무과장), 의성군수(재무과장), 청송군수(재무과장), 영양군수(재무과장), 영덕군수(재무과장), 청도군수(재무과장), 고령군수(재무과장), 성주군수(재무과장), 칠곡군수(세무과장), 예천군수(재무과장), 봉화군수(재정과장), 울진군수(재무과장), 울릉군수(재무과장),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세무과장), 김해시장(회계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재무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무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대리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본부	2016. 5. 17.
		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840	(2016. 5. 17.)	접수 재무과-10589 (2016. 5. 17.)
우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0 한국지방세연구 / http://www.kilf.re.kr		
전화번호	02-2071-2723	팩스번호	02-2071-2722 / s1h11@kilf.re.kr / 대국민 공개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069호(2016. 8. 25.)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편성, 통보, 정산 등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출연금 산정서식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하여 '16. 9.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1부.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서식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전 시군 세무부서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6. 8. 26.

협조자

시행 세정과-9868

(2016. 8. 26.)

접수 재무과-19989

(2016. 8. 26.)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dakaski@korea.kr](mailto:dakaski@korea.kr) / 비공개(5)

정부3.0 경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경 제 교 통 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
- 사 업 비 : 1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100,000				100,0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 3. 부서의견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금 지원
-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 도모 위함

####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붙임 1] 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055-212-125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6월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경기재단에 이어 전국 2번째)</li> <li>○ 2000년 3월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li> <li>○ 2004년 9월 진주지점 개점</li> <li>○ 2006년 1월 양산지점 개점</li> <li>○ 2008년 5월 마산지점 개점</li> <li>○ 2009년 7월 거제지점 개점</li> <li>○ 2010년 4월 김해지점 개점</li> <li>○ 2011년 4월 사천지점 개점</li> <li>○ 2011년 5월 중소기업 지원유공단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li> <li>○ 2011년 7월 통영지점 개점</li> <li>○ 2011년 11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업체수 10만개 달성</li> <li>○ 2014년 3월 누적 신용보증 지원금액 3조원 달성</li> <li>○ 2015년 1월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행 (2본부3부1팀 ⇒ 1본부2부8지점)</li> <li>○ 2015년 4월 거창지점 개점</li> <li>○ 2015년 5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li> <li>○ 2015년 8월 누적보증공급 4조원 달성</li> <li>○ 2016년 5월 창녕지점 개점</li> </ul>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6.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84 명	81 명	3 명	
임원 (‘16.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이○○	(주)영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16.10~2018.10
	상임이사	-	-	-
	비상임이사	김○○	경상남도기업지원단장	2016.10~2018.10
		엄○○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
		장○○	현대로템(주)창원공장공장장	“
		이○○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이○○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		
감사	송○○	공인회계사송정아사무소 대표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기본재산관리, 구상권의 행사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86,125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1,87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210,291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8,720	8,592	8,768		부채	24,16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0	0	0		자본 <sup>1)</sup>	186,12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618				15,529		△91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참고자료

인쇄 : 박기호 / 경제교통과 (2016-10-06 15:03:03)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웃는 경남경제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 군정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불임과 같이 거창군의 출연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부장	박상진	본부장	김인수	이사장	2016. 8. 25.
						이광시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 2016-1432	(2016. 8. 25.)	접수	경제교통과-10362	(2016. 8. 26.)		
우	641-20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층			/ www.gnshinbo.co.kr			
전화번호	055-212-1296	팩스번호	055-212-1265	/ kaiser3@gnshinbo.co.kr		/ 대국민 공개	

문서관리카드 경제교통과-10362 1/1

# 산 림 과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 2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200,000	200,000	200,000	-	-	200,00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 3.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전화번호 : 055-943-3924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6.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5명	
임원 (‘16.10.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조○○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강○○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최○○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임○○	거창석산협회장			"	
		임○○	거창군청(기업지원과)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6. 3. 21 ~ '19. 3. 20	
	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16. 3. 21 ~ '19. 3. 20		
	감사	이○○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이○○	이상철변호사사무소 대표			'16. 3. 21 ~ '19. 3. 20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59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330	400	401		부채	1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200	200	200		자본 <sup>1)</sup>	14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00			329			71

[붙임 2] 관계 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8. 1. 14)

###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생교육센터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대표 양동인)
- 사 업 비 : 5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7년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 사업내용 : 장학사업 등

## 3.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 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거창의 교육경쟁력을 향상 강화 기대

##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붙임 1] 출자·출연 기관현황

##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출연기관)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1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6.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		17명		
임 원 (‘16.10.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양○○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민주평통회장		2016.9.29.~2018.9.28		
	이사	강○○	거창군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강○○	모동기업대표		2005.12.16~ 2017.12.15		
		이○○	전) 경남교육위원		2005.12.16~2017.12.15		
		송○○	전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6.9.29~2017.12.15		
		최○○	화성건설 대표		2005.12.16~2017.12.15		
		오○○	전 거창중학교 교장		2016.9.29~2018.9.28		
		김○○	경남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		2016.9.29~2018.9.28		
		도○○	거창홍사단 대표		2013.12.16~2017.12.15		
		최○○	김순호세무회계사		2013.12.16~2017.12.15		
		강○○	거창위생 대표		2013.12.16~2017.12.15		
		민○○	거창신문 대표		2016.6.10.~2016. 8. 4		
		양○○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6.6.10.~2017.12.15.		
		이○○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6.6.10.~2017.12.15.		
		감사	이○○	이재민세무사대표		2013.12.16~2017.12.15	
감사	표○○	YMCA 이사장		2016.9.29~2017.12.1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1,314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000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0,515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12,030	13,228	11,830		부채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690	1,400	1,000		자본	10,515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738			1,223			10,515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 제4조(임원)

-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이사회)

-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3. 교육여건 개선사업
  -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조성)

-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재정지원)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 문화관광과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문화재단을 설립으로 군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 문화예술 행사, 축제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문화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 문화 조직 구성으로 지역문화 역량을 결집시키고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 사 업 비 : 5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1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16년	-	50,000	50,000	-	-	50,000	-

- 사업내용 : 거창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조성

## 3. 부서의견

- 거창문화재단은 우리군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 예술·공연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어야 하며,
- 재단설립 허가조건인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금 편성은 필수 요건임

## 4. 참고사항

- 재단 설립안 : 붙임참조

# 『거창문화재단』 설립(안)

## 1 재단설립의 방향

### 테마가 있는 거창한 문화 관광

#### 목 표

-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일관성 · 효율성 확보
- 분야별 전문 인력 활동으로 우리군 문화 경쟁력 극대화
- 거창 군민이 참여하는 실존하는 생활형 예술인 다수 육성
- 문화 예술의 지역 브랜드화로 거창한 「문화융성」 시대 달성



- 지역 대표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대축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 효율적인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정책개발
  - 문화센터 연계, 문화예술 도시 정책개발, 포럼 · 세미나 개최
-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과 집행
  - 엘시스테마 프로그램, 콘텐츠코리아 랩, 음악도시 등
-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 군민 1인 1악기 연주 프로그램 운영
  - 테마있는 상시 거리 공연/로타리, 시장길, 근대의료박물관

## 2

# 재단설립 안

## 1 설립개요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거창문화센터
- 시설연왕 : 문화센터
  - 연면적 4,152㎡ / 2,236㎡(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휴게실, 음향실, 조명실, 사무실, 무대조종실, 전기실 등
- 설 립 안
  - 이사회 : 15명 이내/ 이사장(거창군수)
  - 조직안 : 2팀 8명/ 상임감독, 사무처장, 기획팀2, 문화사업팀5
    - ※ 공무원 등 파견 : 공무원 4명, 공무원 1명
    - ⇒ 장기적 : 공무원 파견 2명으로 축소, 전문가 확충
  - 예산안 : 3,632백만원/ 출연금 50백만원, 사업비 3,582백만원

## 2 재단 조직 안



## □ 조직 구성

구 분	인원	내 용	비 고
상임감독	1	• 문화재단 홍보	비상근전문가
사무처장	1	• 문화재단 총괄	전문가
기획팀	팀장	1 • 경영 및 기획 총괄 • 제반행정업무 전반	파견
	팀원	1 • 회계, 급여, 근태관리 • 이사회 운영 • 행정업무 지원	파견
문화사업팀	팀장	1 • 축제, 문화행사 기획 총괄 • 거창국제연극제(7월말~8월초) • 콘텐츠사업 추진	전문가
	팀원	1 • 거창한마당대축제(9월 말~10월 초) • 각종 공연 및 행사 지원 • 공모사업 추진	전문가
	시설운영	3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대관 업무 등	파견

## 2 재단 운영 안

### □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7조
- 구성 : 15명 이내
  - 위원장 : 부 군 수
  - 위원 : 의회추천 1명, 공무원 1/4이내, 전문지식과 경험자 등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자는 2년 이내, 한차례 연임 가능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임 무
  -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법7조), 출연기관 임원 해임(제9조)
  - 경영실적평가과 경영진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사항

## □ 임원 및 직원 구성

### ○ 이사회 구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정원 : 이사(15명 이내, 이사장-군수), 감사(2명)
- 구성방법 : 10월~11월 경 법률 제9조 2항에 따른 공개모집 임명

### ○ 직 원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모집임명 : 공개경쟁시험을 원칙, 곤란 시 경력·자격자 대상 경쟁채용

### ○ 주요업무

- 초창기 : 국제연극제, 한마당축제, 문화센터,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 정착기 : 문화예술 정책·연구·창작 지원, 지역문화·예술·관광 육성

## □ 소요예산 안 : 3,632,000천원 정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금액	소요내역
계	3,632,000	
설립 출연금	50,000	설립 기본재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500,000	인건비(213), 사무관리비(56), 공공운영비(200)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1,650,000	한마당대축제(750/녹색공간, 마라톤, 평생학습축제 제외),국제연극제(9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32,000	문화센터 기획 공연 및 전시회 운영
민간자본사업 보조 (402-01)	900,000	문화센터 무대기계 교체 등 각종 공사, 집기구입, 자본 형성적 경비